

한동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한동대학교 총동문회(이하 “이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회는 기독교 정신과 한동대학교의 설립취지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한동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한동대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와 회보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4. 한동대학교의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사업
5. 한동대학교의 평생사역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
6. 기타 이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칙 등의 제·개정) ① 한동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이하 “이회칙”이라고 한다)은 이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전항의 제·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40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제19조의 방식을 통하여 의결한다.

③ 기타 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 등”이라고 한다)

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제·개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 ① 한동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자
- ② 한동대학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
- ③ 한동대학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 수료자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 ① 사회교육원을 수료한 자
- ② 한동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한동대학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0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한동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한동대학교 또는 이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아 선임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이 회칙에 따른 각종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를 성실히 부담하고 이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각 회의의 의장의 지휘에 따라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명
3. 이 사 : 11명 (당연직 이사)
4. 사무국장 : 1명
5. 분과위원장 : 20명 이내
6. 분과위원 : 각 분과 별 10명 이내
7. 감사 :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① 회장은 정회원 중 80명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제19조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 학부 동문회의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경영경제학부국제어문학부
2.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3. 국제어문학부
4.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
5. 기계제어공학부
6. 법학부
7. 산업정보디자인학부
8.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9. 생명과학부
10. 언론정보문화학부

11. 전산전자공학부

-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⑥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⑦ 감사는 회장과 이사회가 각 1명씩 지명하고, 총회에서 제19조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선임한다.
- ⑧ 부회장은 분과위원장 내지 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회칙 개정 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임원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학번순에 따라 고학번인 자(동학번인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칙의 제·개정, 임원의 선출 등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④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관리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각 분과 별 업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등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 절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전항의 정기총회는 매 해 2월 졸업일 전후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날짜, 장소, 안건 등을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이 회 웹사이트와 한동대학교 인트라넷 및 동문회보에 이를 공고하고, 전자우편으로 1주일 전까지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 400명 이상의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한 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시총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4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전 항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회장은 해당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29조의 방식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칙의 제·개정
- ② 회장 및 감사 선임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 2 절 운 영 위 원 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위임사항
2.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주요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안 심의
4. 회비, 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5.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면
6. 준회원, 특별회원 승인 및 명예회원 추대
7.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8. 회원의 포상·징계
9.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 책정
10. 총회 제출 안건상정
11. 기타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②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 3 절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안 심의
2. 사무국장 선임
3. 감사 지명
4. 기타 사항

제 4 절 분 과 위 원 회

제2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류협력위원회 : 이 회의 대내외 교육·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이 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한동대학교 평생사역지원센터와의 협력 사항
2. 국제위원회 : 이 회 및 한동대학교의 세계화 추진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획위원회 : 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 중장기 발전계획 및 각종 행사 기획, 지도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 : 이 회의 조직강화 활동, 회원명부 발간 및 국내외 지회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5. 총무위원회 : 이 회의 각종 행사 집행, 지원 및 사무국 지원에 관한사항, 이 회의 재정 및 경리, 각종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6. 홍보위원회 :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대내외의 필요한 홍보 및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회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제28조(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분과위원회 : 정,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분과위원회 :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분과위원회 : 과학·기술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분과위원회 :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분과위원회 : 문화, 예술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조분과위원회 : 법조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건분과위원회 : 보건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분과위원회 : 사회복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언론분과위원회 : 언론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성·가정사역분과위원회 : 여성·가정사역 관련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종교위원회 : 종교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창업·벤처기업분과위원회 : 창업·벤처기업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3. NGO·NPO위원회 : NGO·NPO 관련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건축·건설분과 위원회 : 건축·건설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 장 총 투 표

제29조 (총투표) ① 운영위원회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전체 정회원을 대상으로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 1. 이 회의 회칙의 제·개정
- 2. 제20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 중대한 사안
- ② 총투표는 정회원 800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투표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재 정

제30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31조(회계연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지 회

제33조(구성) 지회는 각 지역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제34조(운영) ①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운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속회원 및 임원명단, 구성목적 및 주요활동 등을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을 의결한 201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하여 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 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회칙의 개정 이전에 종전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된 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끝.